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14.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양주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기획예산과

라. 입법예고 : 2 2023. 5. 25. ~ 2023. 6. 14.(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에 적용하는 대상 사업기준이 「지방공기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붙임1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폐지 후에도 세출 및 세입의 증감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조례 폐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장 이장호